



제42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국방위원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지방병무청장 위임 근거 마련〉

■ 강대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7377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강대식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5. 1. 9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,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·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,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「병역명문가 선정·취소 기준 및 절차」 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(안 제78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현행법상 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
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
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(안 제78조제1항)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 제 20조, 제31조의2제2항, 제34조의2 제5항, 제70조제1항·제3항, 제81 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 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.	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 -- ----- -----제8 1조, 제82조의3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
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병역
명문가를 선정하고 이를 선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병역명문가 선정기준은 3대¹⁾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²⁾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하고 있으며, 선정된 가문 수는 2024년 말 누적 기준으로 총 가문수 16,424가문, 병역명문가에 속한 인원은 80,560명으로 파악되고 있음.

- 병역명문가는 연중 접수를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병역명문가 증서, 패 및 대통령 기념품 교부, 병무청 홈페이지 「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」에 게시, 국·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·면제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<병역명문가 선정 업무 절차>



1) ‘3대 가족’이라 함은 조부의 직계 비속 남자 모두를 일컫는 것으로 조부를 1대로 하여 2대인 부·백부·숙부 그리고 3대의 본인·형제·4촌 형제를 말함.

2) 3대 대상자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치는 것을 의미함.

<병역명문가 선정 현황>

(단위 : 가문, 명)

구 분	'24년	'23년	'22년	'21년	'20년	'19년	'18년	'17년	'16년
선 정	4,512	2,465	1,816	1,236	1,017	741	714	492	560
병역 이행자	21,290	11,620	8,985	6,289	5,222	3,820	3,779	2,670	2,932

- 현행법 상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법적 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일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.³⁾
- 이에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를 병무청장 소속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병무청 고시에 따라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 위임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
02)6788-5307

3)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.